

「전통시장 소형화장실 설치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중구와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중구가 「전통시장 소형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1. 사업명 : 「전통시장 소형화장실 설치사업」
2. 사업기간 : 2015. 09. ~ 2015. 12.
3. 사업장소 : 동평화패션타운
4.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여성용) 설치
5. 총사업비 : 금53,000천원

제3조(협력 등의 범위)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의 협력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현장정리, 노점상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
2. 사업장의 안전대책에 관련하여 중구가 지정하는 사항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4. 기타 중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중구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 사업비의 확보가 불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사업축소 등)할 때에는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분담) 사업비 금53,000천원 중 중구가 금26,500천원(시비)을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금26,500천원을 각각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전액 부담한다.

제6조(사업비의 입금) ①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의 부담액(26,500천원)을 중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 후에 중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좌명	중구청장
계좌번호	(계좌번호 추후개설)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중구는 본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한다.
② 중구는 민자부담금에 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8조(사업비의 정산) 중구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3,000천원 이내 사업비에 대하여 중구가 50%,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50% 부담비율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제9조(사업완료 시설물에 대한 관리) ①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존속 시까지 관리·운영상 모든 의무를 갖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②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등)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이를 중구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2.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중구 또는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 1.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 2.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 3. 중구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③ 중구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중구에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구와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중구와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구 청 장 최 창 식 (인)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18, (신당동))

대 표 김 명 자 (인)